

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마을활력소 건립(영구시설물 축조) 동의안

의안 번호	43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2월 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주도하여 조성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참여하는 마을활동 거점공간인 마을 활력소를 조성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
- 나. 노원구는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시유지에 마을활력소(수락행복발전소)를 조성하여 2018. 5월에 개관, 운영하고 있음
- 다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 규정에 의거 시유지상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토지개요

- 위치 :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996-10
- 면적 : 138 m^2 (구유지 186 m^2 포함 토지면적 324 m^2)
- 소유자 : 서울특별시
- 도시계획시설 : 제2종일반주거지역
- 공시지가 : 357,420천원 (138 m^2 × 개별공시지가 2,590,000원)

나. 시설 개요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996-10 일대
- 건립규모 : 연면적 300.35㎡, 지하1층~지상3층
- 건립비용 : 1,300백만원 (시비 700백만, 구비 600백만원)
- 공사기간 : 2017. 9. ~ 2018. 5.
- 주요시설 : 마을북카페, 지역아동센터, 주민커뮤니티공간 등

층 별	주용도	면적(㎡)	세부용도	비 고
지하1층	기계실	27.96	수다방, 기계실 등	옥상 - 휴게공간
지상1층	마을북카페 커뮤니티공간	117.76	도서열람, 커피판매, 소모임공간	
지상2층	지역아동센터 커뮤니티공간	101.48	집단지도실, 조리실, 다목적 홀, 강연장 등	
지상3층	지역아동센터	53.15	집단지도실, 사무실	
합 계		300.35		

다. 그간의 추진사항

- '16. 1. : 노원구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조성기본계획 서울시 제출
- '16. 5. : 2016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통과(적정)
 - 내용 : 토지사용료 5년간 감면(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사용조건)
- '16. 7. ~ '17. 8. : 노원구 사업 제반절차 이행
 - 사업실시계획 고시, 영업권 및 이주정착금 보상, 시공사 선정 등
- '17. 9. ~ '18. 5. :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
- '18. 5. : 수락행복발전소 개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량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나. 예산조치 : 2016~2017년 1,300백만원(시비 700, 구비 600)

다. 기 타 : 위치도 및 현장사진



※ 작성자 : 지역공동체담당관 공동체공간조성팀 이훈상 (☎2133-6344)